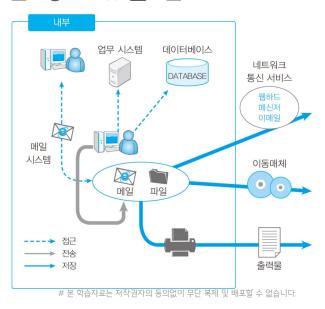


# 한 눈에 보는 정보 유출 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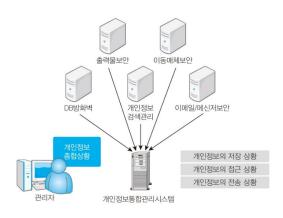
생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3

####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체에 걸친 개인정보 종합 관리기술

-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들은 각기 자신만의 보호
   기술과 영역을 갖고 있음
  - 해당 조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누가 보유하고 있고, 누가 접근했으며, 누가 외부로 전송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, 유출사고 발생 시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
  - 개인정보 종합관리 기술은 이 필요성을 만족시킬수 있음



성 상명대학교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 단계별 보안대책과 보호기술

효과적으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, 저장, 전송 단계별로 보안대책이

필요함

유출 단계	보안 대책	관련 보호기술/제품
접근	중요 정보의 접근 내역을 기록하고 감사    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    해킹을 통한 정보 획득을 차단	DB보안 기술(DB암호화, DB방화벽)     네트워크 DLP(이메일/메신저 보안 기술)     IPS/IDS     방화벽/웹 방화벽 .PC보안/서버보안 기술     홈페이지 유출방지 기술
저장	PC와 서바상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정보를 식별하고 (조직 상황에 따라) 중앙집중적 관리     업무상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     업무상 필요 없거나, 필요기간이 지나면 삭제	• 엔드포인트 DLP(개인정보 검색/관리 기술) • 문서 암호화 기술 • 파일 완전삭제 기술
전송	외부로 전송되는 정보 내역을 기록하고 감사     정당하지 않은 중요 정보의 외부전송 차단	이메일/메신저 보안 기술     엔드포인트 DLP(이동매체 보안 기술)     출력물 보안 기술     보안서버     VPN 기능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5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기술적 보안 제품



성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 법적 근거

#### 괴시

####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, 2020.8.11. 시행)

#### 개인정보보호법

제29조 (안전조치의무)

#### 개인정<u>보보호</u>법 시행령

제30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7

####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목적과 용어의 정의

■ [제1조]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의 목적

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<mark>술적 · 관리적 ·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</mark>을 정하는 것

#### ■ [제2조] 사용하는 용어

- 정보주체
- 개인정보파일
- 개인정보처리자
- 대기업
- 중견기업
- 중소기업
- 소성공인

- •개인정보보호책임자
- 개인정보취급자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
- 위험도분석
- 비밀번호
- 정보통신망
- 공개된 무선망
- 뫠일기기
- 바이오정보
- 보조저장매체
- 내부망
- 접속기록
- 관리용 단말기



※용어의 정의는 고시 참조 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 유형별 원전조차 조목용

#### [별표]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차등 적용

유형1 (완화) 1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, 단체, 개인

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, 단체, 개인
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
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

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
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
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

성명 상명대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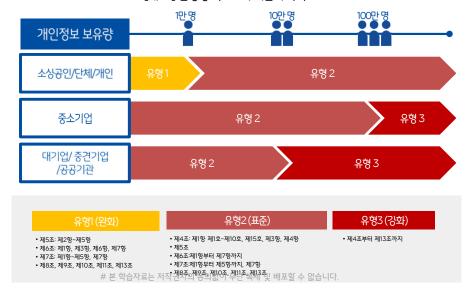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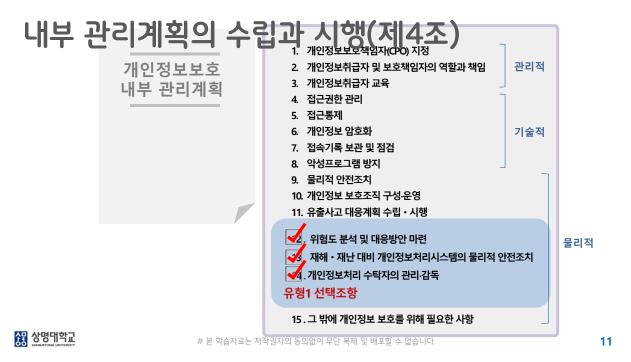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유형별 안전조치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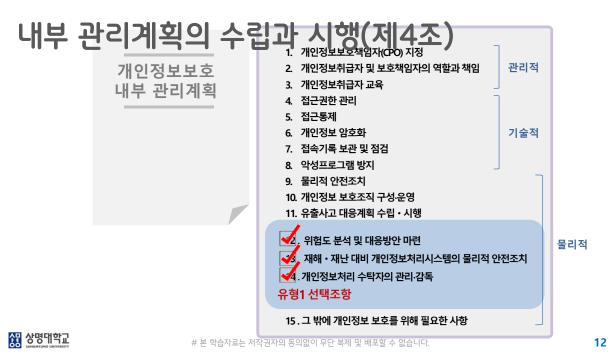
[제1조]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의 목적



생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


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유형1 선택조항
- ② 전보, 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
- ③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최소 3년간 보관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발급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며, 다른 개 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함
- ⑤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
- ⑥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기 술적 조치 유형1 선택조항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

13

####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### 접근통제(제승조)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조치

- 1.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 → 인가 받지 않은 접근 제한
- 2.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 →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
- → 위 기능을 포함하여 조치해야 함

IP(Internet Protocol)

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유형1 선택조항

※ 가상사설망 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

③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 조치 수행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## 접근통제 (제6조)

-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. 변조. 훼손되지 않도록 연 ✓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수행 유형1 선택조항
- ⑤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함 유형1 선택조항
- ⑥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
  - 제1항 적용 안 함
  -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(OS : Operating System)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 이용 가능
- ⑦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. 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15

#### 개연정뽀의 암호화(제7조)

암호화 필요 대상

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

암호화 기준

구분			암호화 기준	
정보통신망,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<mark>송, 수신 시</mark>		비밀번호, 바이오정보, 고유식별정보		암호화 송, 수신 ※ 제7조 ①항 TIP 참조
	비밀번호		호	일방향(해쉬 함수) 암호화 저장
	바이오정보		정보	암호화 저장
	고 유 식 여권번호, 별 외국인등록변	주민등	록번호	암호화 저장
정보처리 시스템에		M 기 배 수	인터넷 구간,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 (DMZ)	암호화 저장
저장 시		어린고도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	내부망에 저장	암호화 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,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,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②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
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에 저장 시	비밀번호, 바이오정보, 고유식별정보		성 <b>보</b> ,	암호화 저장(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)

•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, 이용, 보관,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· 시행





•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도후 '저장! 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(제8조)



- ①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. 관리
- ② <mark>반기별로 1회 이상</mark> 점검 → 개인정보의 <u>분실. 도난. 유출. 위조. 변조 또는 훼손</u>등에 대응하기 위하여
-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. 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



성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, - 막습자로 전기 전건 / 호속 조치 및 메포일수 없습니다.

17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##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(제9조)

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.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. 운영해야 함



- 1.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
  -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
  -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



- 2.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령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
- 3.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(제10조)



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

-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
-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
-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19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물리적 안전조치(제11조)



①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보관 장소(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)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. 운영



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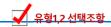


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. 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

다만,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# 재해·재난 대비 안전조치(제12조)







#### 화재, 홍수, 단전 등의 재해. 재난 발생 시
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
-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21

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ory

# 개인정보의 파기(제13조)

- ① 개인정보 파기 조치
  - 1. 완전파괴(소각. 파쇄 등)
  - 2.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
  - 3.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
- ② 1항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일부 파기 조치

전자적 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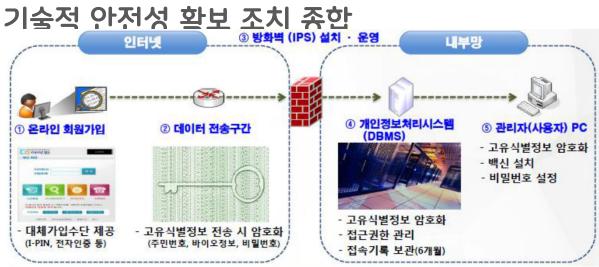
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

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

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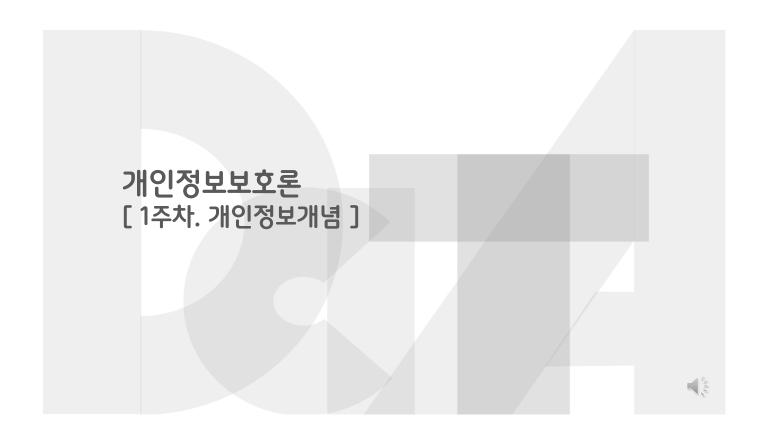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

# 본 학습자료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

### 정보에서의 "의미"

- 정보란 어떤 데이터(자료)를 의도나 목적에 맞게 분석 혹은 가공하여 그 의미를 표현한 것
-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정보,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은 데이터
- 의미란 주관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 사고(思考)와 연결예. 아침 등교길 기억되는 사람
-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'정보'
- ▶ 그래서 정보는 "생각의 표현 "



#### 매체

- 매체 (= 미디어(Media))는 인간 상호간에 정보, 지식, 감정, 의사 등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
- 인간은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
- 마샬 맥루한(Marshall McLuhan) "매체는 메시지이다."
  - \_ 매체 자체가 메시지라고 선언
  - 테크놀로지와 직결되는 매체 자체가 그 내용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.
  - 그의 매체 개념은 단순한 매스미디어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도구나 기술을 포함한다.
  - 인간의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매체라고 본다.
- ▶ 기술결정론적 관점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27

### 개인정보의 5가지 개념

- 1. 개인정보는 '살아 있는' 개인에 관한 정보
- 개인정보는 '개인에 관한' 정보
  - 사적 정보, 공적 정보, 공개된 정보 등 모두 포함
  - 정보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경우
  - 정보의 목적 또는 정보처리의 목적이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
  - 정보처리의 결과가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3. 개인정보는 '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(특정 개인 식별)' 정보
  - \_ 식별의 개념은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
  -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- 개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기호(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보)
  - 개인에 대한 호칭

强 상명대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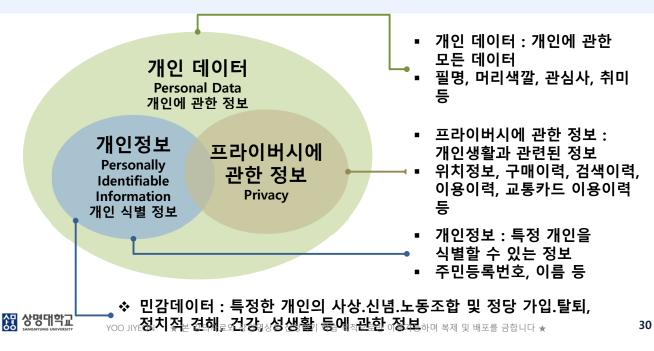
- 4. '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'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- IP주소, 쿠키, 로그기록, 인터넷접속정보 등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쉽게 개인을 추정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정보
  - 차량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관계되는
     특정 개인과의 정보결합을 통해 쉽게 개인을 추정해낼 수 있는 정보
  -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성을 지닌 사물의 위치정보, 가전제품, 전자기기 등 고정된 사물인터넷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과의 정보 결합을 통해 쉽게 개인을 추정해낼 수 있는 정보
- 5. 정보의 종류, 형태, 성격,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
  - 문자, 음성, 부호, 영상 등의 정보

성명대학교 생명대학교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29

#### 개인정보 분류1



#### 개인정보 분류 2

- 고유식별정보
  - \_ 그 자체로 개인을 직시하는 정보
  -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
  - 홍채, 지문, 정맥, 안면인식 등 바이오 정보
  - 개인신용카드번호, 계좌번호 정보 등 포함
- 개인식별정보
  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-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이메일주소, 생년월일 등
- 제한적 본인 식별정보
  - \_ 개인식별정보와 조합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정보
  - IP주소, MAC주소, 쿠키와 같은 '자동 생성 정보'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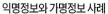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31

#### 개인정보 분류 3

- 개인정보
  - 현실에 존재하는 자연인으로서의, 구체적인 '개인'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
  - 이름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이 포함
- 가명정보
  - 실명을 천공으로 대체하거나 전화번호를 가상의 번호로 대체하는 등 개인화된 부분을 가리되, 그 속성값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
- 익명정보
  - 특정한 인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 통계라든가 성별 통계의 개념으로 범주화 시킨 정보







홍XX 가명정보 010-1XX-XXXX 1977년 6월 남성 서울 강남구 2020년 1월신용카드 사용금액 127만원



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 개인정보보호론 [ 2주차. 프라이버시 개념 ]

##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

- "The Right to Privacy" => "The right to be let alone" 으로 개념화
- [프라이버시 침해 유형(William Prosser)]
  - \_ 개인의 영역 또는 사적 사항에의 침입
  - \_ 개인의 사적 사실의 공개
  - \_ 공중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의 공표
  -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이 있는 경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



### 프라이버시 권리 관련 CASE STUDY

- Griswold v. Connecticut (1965)
- Katz v. United States (1967)
- Roe v. United States (1973)
- Scarfo v. United States (1999)
- Kyllo v. United States (2001)
- O'connor v. Ortega (1987)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35

###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

- Zone of Privacy(프라이버시 구역) 필요
  - \_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
  - 국가가 사회적 질서유지나 가치관 보호를 위해 일부영역은 간섭이 가능하나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
- 이를 위한 "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" 설정
  - 미국 Privacy 보호범위
  - 즉, Privacy의 보호범위는 자신이 Privacy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합리적인 결과물로 정해짐)
-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의 두가지 개념
  - A person exhibit an actual expectation of privacy
     (자신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는가?)
  - Society recognizes the expectation as reasonable
     (사회가 그러한 개개인의 기대를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?)

성명 상명대학교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# 정보자기결정권

- 1971년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(Niklas Luhmann)은 '정보의 자기결정권 (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)'을 주창
  - 독일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인격을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음
- 1983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이른바 인구조사 판결 (Volkszählungsurteil)에 의해서 정보자기결정권(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)이라는 명칭으로 수용됨
  - 인구조사법이 규정한 인구조사가 개인의 습관, 출근 교통수단, 부업 내역, 학력 등 매우 자세한 개인정보를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행정목적으로 주 정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37

####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의 변화

-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: (소극적 개념) 홀로 있을 권리(the right to be let alone), 사생활 비밀유지와 자유
-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: (적극적 개념) 정보프라이버시(information privacy)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
  - (열람,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가능) 청구권적 기본권
- ▶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: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



#### 프라이버시 개념 범위 확장

- 공간 프라이버시
  - 물리적 개념, 심리적 개념을 포함한 공간, 특히 한 개인의 지역적 독거
  - 원치 않는 대상이나 신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와 관련
- 결정 프라이버시
  - 프라이버시를 선택과 관련한 것으로 인식
  - 아무런 방해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. 개인의 자유와 연관
- 정보 프라이버시
  - \_ 개인정보의 흐름과 관련
  - 개인정보의 획득, 공개, 사용 등 정보처리과정에서 개인의 통제. 그리고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개인의 청구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39

### 프라이버시 # 사생활

- 프라이버시(privacy)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
- 사생활 (私生活) 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
-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의미
- 그런 점에서 '사생활'보다는 '프라이버시'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

## 개인정보보호론 [ 3주차. 프라이버시원칙 ]

### 세부적인 프라이버시 개념 유형: 6가지 유형

- 홀로 있을 권리(The right to be let alone)
  - \_ 일반법적인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신체적, 정신적으로 "침해당하지 않은 인격"
- 접근제한(Limited access to the self)
  - \_ 타인에 의한 원치 않는 접근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
- 기밀성(Secrecy)
  - 타인으로부터 특정 문제를 숨김(concealment)
- 개인정보통제(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)
  - \_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
- 인격(Personhood)
  - 자신의 개성(personality), 특성(individuality), 존엄성(dignity) 보호
- 친밀감(Intimacy)
  - 자신의 친밀한 관계(intimate relationships)나 생활 측면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통제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# 프라이버시 인식의 변화

#### 혼자 있을 권리 (Right to be let alone)

개인의 생활영역 또는 개인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 생활 영역에 대한 한정된 정보로서의 인간 생활영역을 의미

# 개인정보자기결정권 (Self-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)

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

#### [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 ]

- ✓ 타인에 의한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는 개인정보의 성격, 수집목적, 이용형태, 처리방식에 따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나
- ✓ 적어도 정보주체의 인격적 요소인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처리·조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43

### 개인정보자기결정권(Self-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)
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 =
  - "사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익"(interest in avoiding disclosure of personal matters) +
  - "자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"(interest in independence in making certain kinds of important decisions)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
  - 개인인격의 구성요소들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화 됨으로써 정보주체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권



#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: OECD 8원칙

구분	원칙	내용	
1 원칙	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	개인정보의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고 수집하는 경우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	
2 원칙	정보정확화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	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수집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이 상태를 유지해야 함	
3 원칙	목적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	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수집하기 이전 또는 당시에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함	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# 15

### OECD 8원칙

구분	원칙	내용
4 원칙	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	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로는 이용할 수 없음(단,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는 제외)
5 원칙	안전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	개인정보의 분실, 불법적인 접근, 훼손, 사용, 변조, 공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
6 원칙	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	개인정보 관리자의 주소 등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목적,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공개방침이 있어야 함



YOO JIYEON  $\qquad \star$ 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$\star$ 

#### OECD 8원칙

구분	원칙	내용
7 원칙	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	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, 열람요구, 이의제기 및 정정, 삭제, 보완 청구권을 가짐
8 원칙	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	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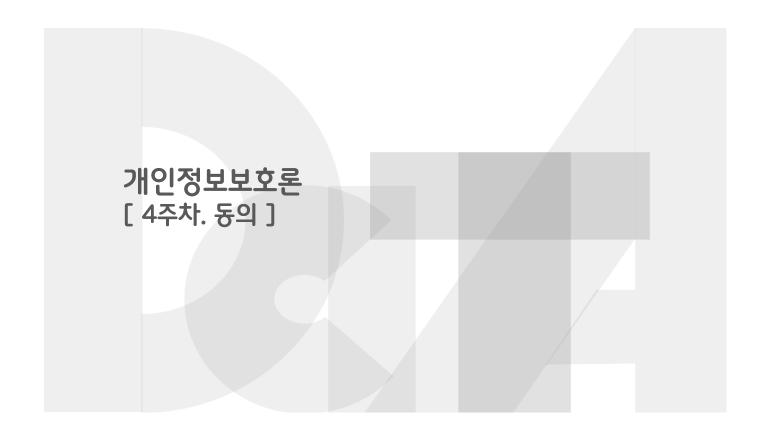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47

# OECD 8원칙에 기반한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



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

# 동의 기능
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? 동의
- 동의 방식
  - Opt-in(사전동의)
    - ✓ 사전동의, 강제화로 문제 발생 vs 지나친 규제로 창의적 활용 저해
  - Opt-out(사후거부)
    - ✓ 무분별한 정보 전송 피해



#### 동의 문제점

- 1. 동의 만능주의
  -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
  - 정보주체의 동의로 부당한 상황을 승화시키는 것 => 동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해침
- 2. 동의의 형식화
  - \_ 동의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는 과정
  - 청약 행위 + 승낙행위 + 의사 합치 => 청약 행위 + 승낙 행위 (의사의 합치가 없음)
- 3. 동의로의 일원화
  - 다른 '적법사유'의 사문화 => 다양성과 혁신의 저해 요인
- 4. 동의 내용의 난해
  - \_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음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51

#### 동의 관련

- "Privacy Policy" Dilemma
  -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프라이버시 정책(동의제도 포함)이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무분별한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해치게 되는 상황
    - ✓ 남발되는 고지와 무의식적 동의의 일상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(통제권) 허울
    - ✓ IoT, Bigdata, Fintech 산업에 장애요인
- Privacy Paradox
  - "Privacy Policy" Dilemma 의 일종으로 인식과 행태의 차이
  - 프라이버시 중요성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실제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# 효율적 동의 확보 방안

- 약관 Infographics
- 등급제
- Privacy Profile Setting
- Consent Management Platform
- Personal Data Store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# 53

###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 6대 위협

- 1. IoT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위협 요소 : Privacy Divide
- 2. 동의서를 읽거나 동의에 클릭한다고 해도 실질적 동의로 보기 어려운 상황 발생
- 3. 수집목적을 벗어난 사물인터넷 수집 정보 유출 위험 커져
- 4. 사용자들의 기기 사용 행태나 습관 등의 모니터링과 유형화에 따른 침해 위험 확대
- 5. 사물인터넷 기기로부터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비식별성 유지의 어려움
- 6. 사물인터넷 기기간 자동 교환 정보 폭증에 따른 보안위험 증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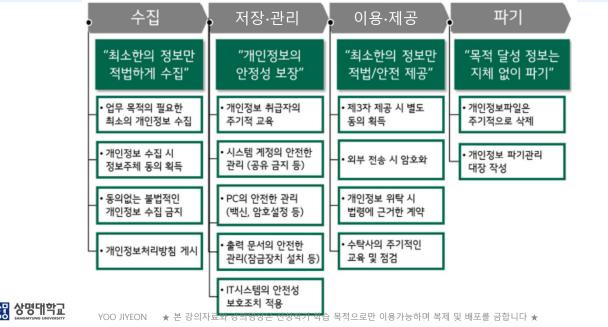
개인정보보호론 [ 5주차. 개인정보 생명주기 ]

# 개인정보 생명주기(Lifecycle)

- 개인정보 생명주기 : 사람의 일생처럼 개인정보 관리 단계를 의미
  - \_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련의 단계
  - \_ 수집 저장/관리 이용/제공 -파기
-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안 관리모델 (TTAS.KO-12.0053)



####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사항



强 상명대학교

57

#### 수집단계

-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
  -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소유자로부터 서비스 제공, 마케팅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
  - 개인정보 소유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(가입)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며,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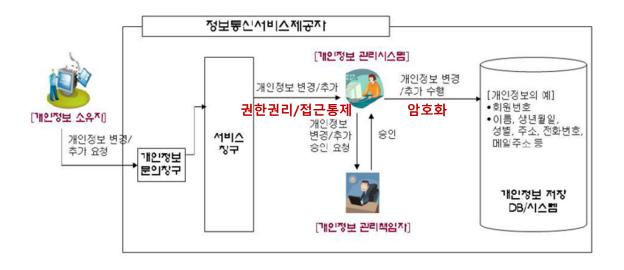


59

### 저장·관리 단계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관리하는 단계
  - 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, 여기 저장 단계에는 저장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
  - 관리란,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취급자 등만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관리, 암호화 등이 포함
  - 개인정보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책임자의 승인 하에 해당 개인정보를 변경·추가·파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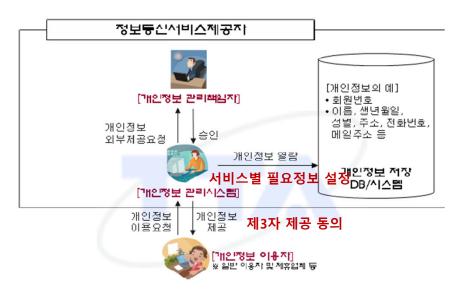


61

### 이용·제공 단계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단계
  - 이용자가 수집 및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회원인증, 서비스제공, 제품홍보, 요금정산, 제품배달, 민원처리 등에 사용
- 서비스 이용자 인증이나 인터넷 쇼핑 등의 기본 서비스 및 이벤트 등의 부가 서비스를 위해 이용
-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자 외제3서비스 제공자(위탁업체, 제휴업체)에 제공







63

### 파기단계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의 보유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파기하는 단계
  -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
  - 소유자가 회원 탈퇴를 하거나 IT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, 또는 특정 이벤트가 종료되는 등의 경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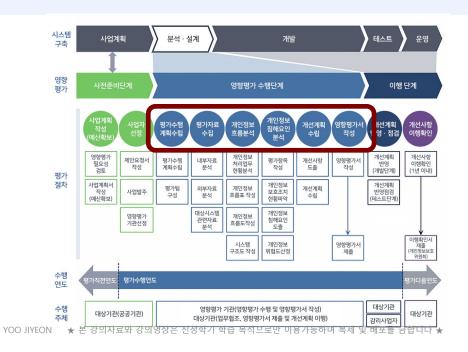


65

####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

-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, 운영될 경우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, 예측, 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
- 개인정보 영향평가 범위
  -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,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
  -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통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
  - \_ 개인정보를 보유, 관리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
  - 개인정보 생명주기 단계에서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
  - \_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





성 상명대학교

67

- 1. 영향평가계획 수립
  -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
- 2. 평가자료 수집
- 3. 개인정보 흐름분석
  - 3-1.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
    - ✓ 개인정보처리 업무표 작성
    - ✓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 작성
  - 3-2.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
  - \_ 3-3.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
    - √ 1) 총괄흐름도 작성
    - ✓ 2) 업무별 흐름도 작성
  - 3-4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



- 4.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
  - 4-1. 평가항목 구성
- 5개 영역 25개 세부 평가분야 ①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②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④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⑤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

  - 4-2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(항목별 평가)
  - 4-3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
  - \_ 4-4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
    - ✓ 위험도 = 개인정보 영향도(자산가치) + (침해요인 발생가능성 x 법적 준거성) x 2
- 5. 개선계획 수립
  - 5-1 개선방안 도출
  - 5-2 개선계획 수립
- 6. 영향평가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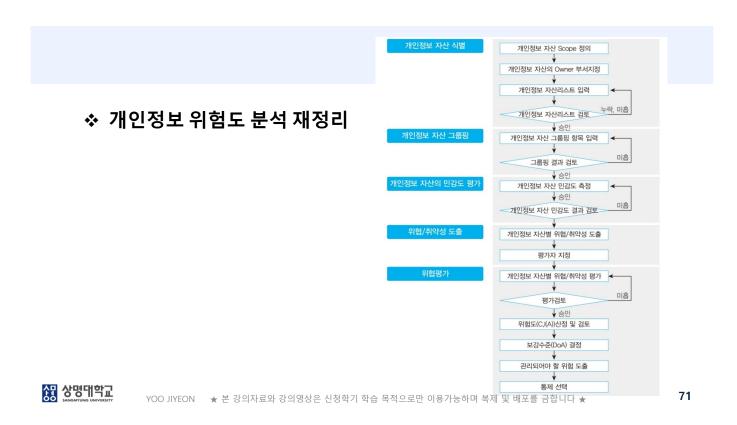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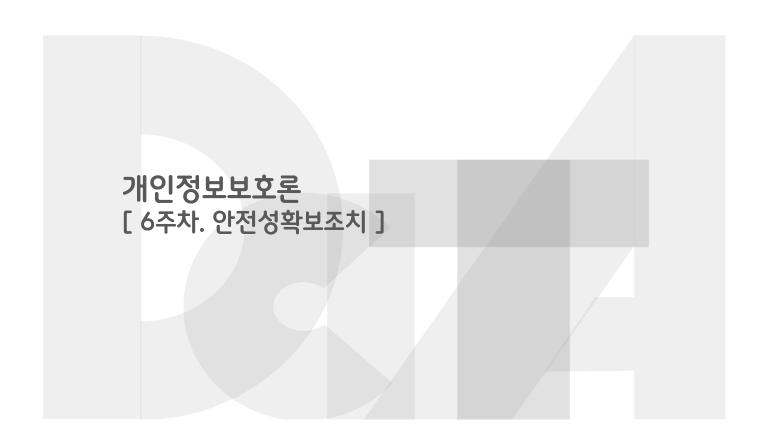
69

####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

■ 위험도 = 개인정보 영향도(자산가치) + (침해요인 발생가능성 x 법적 준거성) X 2







####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

■ [제1조]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의 목적

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• 관리적 •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

- [제2조] 사용하는 용어
  - 정보주체
  - 개인정보파일
  - 개인정보처리자
  - 대기업
  - 중견기업
  - 중소기업
  - 소상공인

- •개인정보보호책임자
- 개인정보취급자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
- 위험도분석
- 비밀번호
- 정보통신망
- 공개된 무선망
- 모바일 기기
- 바이오정보
- 보조저장매체
- 내부망
- 접속기록
- 관리용 단말기

投口 상명대학교

※용어의 정의는 고시 참조 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 유형별 안전조치 적용

■ [제3조] 안전조치 기준 차등 적용

#### [별표]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차등 적용

유형1 (완화)

1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, 단체, 개인

유형2 (표준)

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, 단체, 개인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

유형3 (강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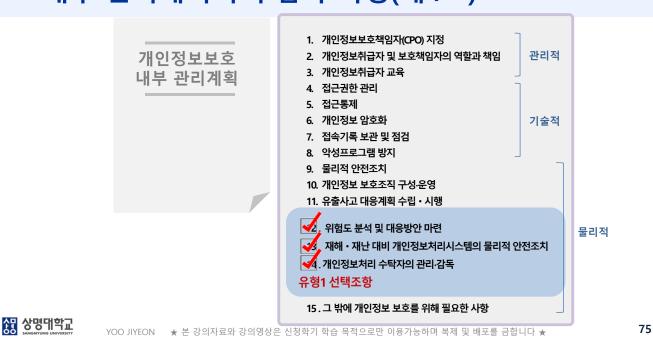
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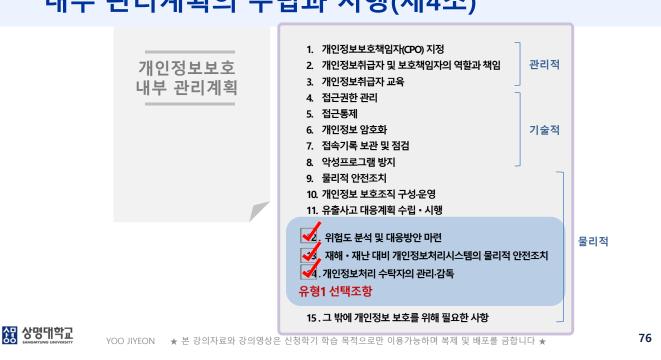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74

##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(제4조)



#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(제4조)



#### 접근권한의 관리(제5조)


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당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유형1 선택조항
- ② 전보, 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
- ③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최소 3년간 보관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발급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며, 다른 개 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함
- ⑤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
- ⑥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기 술적 조치 유형1 선택조항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 접근통제(제6조)

-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조치
  - 1.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 → 인가 받지 않은 접근 제한
  - 2.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 →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
  - → 위 기능을 포함하여 조치해야 함

IP(Internet Protocol)

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<mark>✓</mark>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유형<mark>1 선택조항</mark>

※ 가상사설망 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

③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 조치 수행

생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78

### 접근통제 (제6조)

-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. 변조. 훼손되지 않도록 연 🗸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수행 유형1 선택조항
- ⑤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함 유형1 선택조항
- ⑥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
  - 제1항 적용 안 함
  -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(OS : Operating System)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 이용 가능
- ⑦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. 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79

# 개인정보의 암호화(제7조)

#### 암호화 기준

구분			암호화 기준	
정보통신망,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송, 수신 시	비밀번호, 바이오정보, 고유식별정보		정보,	암호화 송, 수신 ※제7조 ①항 TIP 참조
		비밀번호		일방향(해쉬 함수) 암호화 저장
		바이오정	정보	암호화 저장
	주민등 고 유 식 여권번호, 별 외국인등록번호, 정 운전면허번호 보	주민동	등록번호	암호화 저장
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 시		어크HJ 축	인터넷 구간,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 (DMZ)	암호화 저장
		내부망에 저장	암호화 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,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②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	
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에 저장 시	비밀번호, 바이오정보, 고유식별정보		· 정보,	암호화 저장(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)

•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, 이용, 보관,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· 시행





•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YOC**암호화)알고리즘을 사용하여:암호화한**영화**전장**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#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(제8조)



- ①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. 관리
- ② <mark>반기별로 1회 이상</mark> 점검 → 개인정보의 <u>분실, 도난.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</u>등에 대응하기 위하여
-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. 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





YOO JIYEON

정기 정검 / 호속 조치 · 는 경의자료과 경의영영은 산명목가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목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81

#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(제9조)

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.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 치. 운영해야 함



- 1.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
  -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
  -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



- 2.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령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
- 3.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#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(제10조)



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

-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
-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
-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83

# 물리적 안전조치(제11조)



①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보관 장소(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)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. 운영



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



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. 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

다만,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 재해·재난 대비 안전조치(제12조) 2선택조함







#### 화재, 홍수, 단전 등의 재해. 재난 발생 시
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
-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85

# 개인정보의 파기(제13조)

- ① 개인정보 파기 조치
  - 1. 완전파괴(소각. 파쇄 등)
  - 2.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
  - 3.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
- ② 1항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일부 파기 조치

전자적 파일

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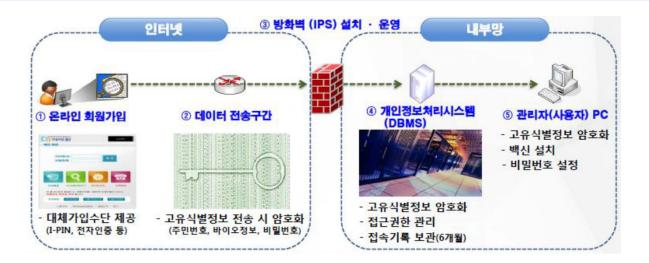
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

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

#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종합





YOO JIYEON ★ 본 강의자료와 강의영상은 신청학기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★